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헌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53

발의연월일: 2021. 3. 12.

발 의 자:이헌승·하영제·박성민

コエ島・조수진・金炳旭

서병수 • 권영세 • 조태용

최형두 · 김성원 · 주호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집단투기사건은 국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으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함. 현행법 따르면 공사의 직원 및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토지 및 주택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모니터링 방법이 없어서 실효성 이 떨어지고 있음. 또한 현행 제26조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조항의 벌칙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부동산거래 시 이를 공사에 신고하도록 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, 공사의 사장은 연간 2회 전체 소속 직원 및 임원의 주택이나 토지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이를

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. 또한 제26조제1항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 록 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제3항 신설, 제28조제2항, 제29조).

법률 제 호
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공사의 임직원들은 부동산 거래 시 이를 공사에 신고하고, 공사의 사장은 연간 2회 소속 임원 및 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하여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제1항에 따른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등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(倂科)할 수 있다.

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개 혅 했 정 아 제26조(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제26조(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금지) ① • ② (생 략) 금지) 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 ③ 공사의 임직원들은 부동산 <신 설> 거래 시 이를 공사에 신고하고, 공사의 사장은 연간 2회 소속 임원 및 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하여 정기 조사를 실 시하며, 제1항에 따른 미공개정 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등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 제28조(벌칙) ① (생 략) 제28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(倂科)할 수 징역과 벌금을 병과(倂科)할 수 있다. 있다. 제29조(과태료) ① (생 략) 제29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②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・징수 부과하다. 한다. <신 설>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

<u>부과·징수한다.</u>